

독감 폭증 속 병원 백신 접종가격 ‘천차만별’

광주지역 병원 똑같은 백신에도 2만5000원~4만5000원 ‘차이’ 의료계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달라”...지역민들 불만 높아

독감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독감 백신 예방접종 가격이 광주지역 병원에서 2배까지 차이가 발생해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이어서 병원이 매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똑같은 백신을 몇 만원을 더 주고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통계를 보면 광주시 46주차(11월 12~18일)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은 23.3명으로 45주차(17.3명) 대비 6.0명 증가했다.

의료계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문제는 예방접종 가격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정보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의 평균 독감백신 가격은 3만 3616원, 전남은 3만

7143원이다. 전국 평균 3만 9284원에 비하면 다소 낮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같은 백신을 사용하는 데도 병원마다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원에 따라 같은 백신을 맞고도 최대 두 배의 돈을 더 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해 지역민의 불만이 높다.

대표적으로 녹십자 ‘지씨플루’ 백신을 접종하는 광주시 서구의 한 의원은 2만 5000원의 접종비를 받고 있으나, 광주시 북구의 한 의원은 5만원을 요구했다. 동구의 한 병원은 3만 5000원을, 서구의 한 의원은 4만 5000원을 요구하는 등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다.

‘비알플루텍 I 테트라 백신주’를 접종하는 광산구의 대형병원은 4만원의 접종비를 받고 있는 반면 광산구의 다른 병원은 2만 5000원을 받는 등

다른 백신도 비슷한 가격 편차를 보였다.

의료계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물가 상승으로 병원에서 구입하는 백신 원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병원 경영을 위해 부득이 가격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김원영 우리들내과 원장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직접 구입해 접종해주는 일종의 서비스다 보니 다른 소매상이나 병원이나 차이가 없다”며 “계약사에서 약제를 구입하는 원가에 세금 문제,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일정 이상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병원은 항체 생성률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면역증강제를 첨가하는 등 차별화해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환 광주시사회장은 “시중에 나와있는 3가 백신, 4가 백신에 따른 차이나 접종 후 잔여 백신을 제약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같은 4가 백신이라면

독감 예방 효과에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들이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잘 찾아보고 자신에게 알맞는 병원을 현명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3가 백신은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2종(H1N1, H3N2)과 B형 바이러스 1종(빅토리아)을 예방할 수 있는 항원을 갖고 있다. 4가는 3가 백신에 또 다른 B형 바이러스 1종(아미가타) 항원을 추가했다.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유료 접종으로 나뉜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 등 독감 고위험군 등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 개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지역 및 병원별 접종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정보 사이트(www.hira.or.kr/npay/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두운 농로서 자전거 치사사고 광주지법, 차량 운전자 무죄 선고

야간에 불빛 없는 농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50분께 나주시 한 농로에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 B(7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은 폭이 좁은 1차로(3.7~4.1m) 농로여서 가로등과 같은 조명도, 반사경 장치도 없었다. 사고시간도 일몰 이후라는 점에서 A씨 차량 전조등 불빛 이외에는 도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멀리서 차량 전조등으로 차량을 인지 할 수 있었고 사고 직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 오로지 전조등 불빛에만 의존해 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갓난아이가 무슨 죄...

부부싸움하다 엄마가 6개월 영아 15층 아파트 창밖 던져 숨지게 해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6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너머로 던져 살해한 A(25)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의 아이를 광주 서구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나가자 전화로 다툼을 이어가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신고를 했지만, 아이는 이미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모텔 근로자 새벽 휴게시간 임금 제외는 최저임금 위반”

광주지법, 업주 벌금형 선고

모텔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서에 새벽 시간(자정-새벽 5시)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으면 이 시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할까.

법원은 업무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봤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영화)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텔 대표 A(5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최저임금 시급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동구의 모텔 대표인 A씨는 상시노동자로 B씨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B씨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

며, 휴게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였다.

A씨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했고 7개월 동안 제외된 임금은 66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운터 공간 옆 직원 휴게실이 있고 카운터 앞에는 ‘키오스크’(무인 계산대)가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의 휴게시간도 A씨의 지시 아래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야간 시간 B씨 혼자 근무하면서 키오스크가 대처하지 못한 손님의 문의에 응대하고, 돌발상황에도 대처하며 간단한 청소 등은 B씨가 담당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내용 등을 보면 B씨에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실제 A씨와 B씨는 휴게시간에도 업무 관련 통화를 수차례 한 점과 휴식 시간임에도 자유롭게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거나 휴식·수면을 보장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목포해경이 지난달 29일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선적의 어선에 오르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부터 2박 3일동안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11척을 검문 및 검색한 결과 조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 선적 어선 한 척을 적발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살인 부른 술자리... 동료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 붙잡아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술에 취해 동료 외국인 노동자를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3일 새벽 1시께 흥기를 휘둘러 동료인 외국인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A(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

다.

A씨는 전남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B(30)씨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을 했으며, 숙소에서도 다툼을 이어가다 홧김에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모두 불법체류자는 아니며, 지난 8월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해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